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729호

나. 발 의 자 : 이종환 의원 외 20명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26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2. 제안이유

- 모든 스포츠 관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·성폭력 없는 환경은 참가자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. 또한, 성폭력의 피해는 선수들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방해할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함.

이를 위해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인 협력과 공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, 명확한 정책 수립,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에 ‘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’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용도에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함
(안 제4조제7호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진흥법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국민적인 우려를 낳았던 체육계 성폭력 파문에 따라 ‘스포츠윤리센터’ 등이 설립되는 등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있었음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사후적 징계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체육진흥기금 운용 현황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30일 설치되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적립한 후, 573억원이 조성된 2011년부터 운용을 시작하였음.

-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42억 9천만원이며, 이는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액의 60%인 73억 8천8백만원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69억 2백만원을 포함한 것임.

< 수입계획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계	14,290	
이자수입	2,337	공공예금, 예탁금 이자
전입금	7,388	일반회계 출연금
예치금 회수	4,565	전년도 예치금

< 지출계획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계	14,290	
비용자성 사업비	12,183	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등 14개 사업
기본경비	10	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등
여유자금 예치금	2,097	여유자금 공공예금 예치

- 2025년도 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‘야구장(잠실야구장, 고척스카이돔) 시설 개보수’와 ‘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’ 및 ‘학교운동부 육성 지원’ 등 미래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있지만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은 보이지 않으므로 동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 폭력을 예방하려는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나.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 및 조례 개정 필요성

- 2018년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대중에 알려진 것을 계기로 ‘미투(나도 말한다) 운동’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, 특히 체육계 쇼트트랙 종목 선수들의 성폭력 실태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기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.
- 또한 ‘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이행 현황’에 따르면,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4년간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폭력, 성비위,

인권침해 등의 비위 348건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것은 140건(40.2%)이 있다고 밝혀졌음.

- 특히 체육계의 성폭력은 단순히 가해자만의 원인이 아닌 청소년 단계부터 선수를 지도하며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, 외부로부터 차단된 폐쇄적 합숙소 및 훈련장소, 사건 발생 후 묵인, 방조, 공조하는 체육계 내부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성폭력의 근원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.
- 정부 또한 ‘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’에서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 인권 신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,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시사하였음.

< 체육계 성폭력 예방 관련 주요 내용 >

□ 체육계 성숙한 문화로 지켜나가는 ‘스포츠 인권’

- (스포츠 인권교육 강화) (성)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사전 이수제 도입 검토(국체법 규칙 개정), 체육계 ‘인권교육 거버넌스*’ 운영

* 윤리센터- (지방)체육회- 대학·프로스포츠협회 협업→윤리센터, 교육콘텐츠·강사 제공

-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을 발표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따른 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그러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체육계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과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,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성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.

라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(안 제4조제7호)

< 관련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7.</u> (생략)	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</u> <u>8.</u> (현행과 같음)

- 동 개정안은 스포츠의 원래 가치를 지키고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의 사업에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.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사업을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고하여 성희롱·성폭력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
- 또한 관련 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는것은 가능하다 판단됨.

의안번호 2729 **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이종환 의원 (보건복지위원회)	2025. 5. 26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〈제안이유〉 ○ 모든 스포츠 관계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,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사업을 시행하여,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, 관련 정책 수립, 피해자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코자 함. 〈주요 입법 요지〉 ○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(안 제9조)		
추진경과	○ 2025. 5. 26. 조례안 발의(대표 발의 : 이종환 의원) - (발의자) 김혜영, 문성호, 오금란, 김원중, 남창진, 황철규 의원 등 21명		
부 서 검 토 의 건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(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1조는 기금설치의 목적을 ‘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, ○ 기금재원을 활용한 체육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사업을 통해, 체육분야 전반에 대한 건전한 문화조성과 선수 경기력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므로,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		
대응방안	○ 해당없음		
상 임 위 처 리 결 과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
향 후 계 획	○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	팀장 장중석(☎2133-2677)	담당 김민주(☎2133-2679)